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9.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 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

나. 상정의결

-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3. 1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수진)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명예기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편집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조항 추가(안 제7조제2항)
- 편집위원 연임 제한 규정 추가(안 제9조제1항)
- 모니터요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명예기자 임기 및 해촉, 명예기자 위촉 시 성별·연령별 고려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5항)
- 명예기자 교육·간담회 개최 및 그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4항)
- 명예기자 신분증 발급 규정 신설(안 제10조6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1.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개 정 안	개 선 안 (참고)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문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문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위 검토의견 참조
2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일반 명예기자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일반 명예기자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② 위 항의 명예기자 위촉 시 <u>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 <신설>	위 검토의견 참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청신문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9명 이내로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과 특정위원의 장기위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¹⁾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제1항에서는 명예기자를 위촉하는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위촉시 성별, 연령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제3항에서는 명예기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임기를 달리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제4항에서는 교육과 간담회를 위하여 예산지원과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후단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제5항에서는 명예기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로 구분하여 해촉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다른 <사례>²⁾를 보더라도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으로 보임. 제6항에서는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극히 일부 사례로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게 동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고는 있으나 통장은 일선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일원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역할이 있는 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에게 구청장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명예기자에게 신분증 발급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신분증의 발급 뿐만 아니라 회수 등 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신분증에 대해서는 공무원증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본 조례안의 관련 규칙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보완토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